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석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6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장례문화로 매장이 통상적이었던 시절 서울 외곽의 산지를 공동묘지로 지정하여 땅자의 공간으로 이용 하였으나 현대에는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을 하여 수목 주변에 묻는 자연장 또는 납골이 증가하고 있는 여건이고,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묘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과거 시립묘지에 매장된 수많은 묘지의 경우는 여전히 국토를 훼손하고 있고 매장 후 수 십년이 경과한 묘지는 후손의 고령화로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시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이나 공원을 관리하는 자치구에 개장 지원을 문의하는 유족이 다수 있으므로 개장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묘지의 수를 감소시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